

경찰의 변사자 처리에 관한 연구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Unnatural Dead Body Treatment by Police -Centering on Japanese Police System-

이상원*, 이승철**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도립청양대학 경찰행정과**

Sang-Won Lee(youp1652@hanmail.net)*, Seung-Chal Lee(hardpan6318@naver.com)**

요약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중심어 : | 변사자 | 경찰 | 형사조사관 | 검시관 | 교육 |

Abstract

Korea has a problem in treating unnatural dead bodies; law enforcement police officers have a difficulty in analyzing an accurate cause of a death, for they are not specialized in autopsy. But they must take charge of the affair at a spot for the first time. Sometimes this may give an indulgence to a killer. It results in generating an unjust victim. So, a police activity in response to an unnatural dead body must be improved surely.

As a response to it, this thesis scrutinizes the unnatural dead body treatment under the Japanese police system, taking a continental law, which has a legal structure similar to our's, and on the basis of it presents a suggestion in response to an unnatural dead body by Korean police.

First, the system on treating the unnatural dead body has to be severe. Second, police engaging in treating the unnatural dead body have to take the education on treating dead bodies more deeply. Third, implements on treating dead bodies have to be secured.

■ keyword : | Unnatural Dead Body | Police, Criminal Investigator | Coroner | Education |

I. 서론

현대국가에서는 내인사(natural death: 질병과 같은 내적원인으로 생명활동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경우)에도 무관심해서는 아니 되지만, 특히 외인사(violent death: 질병 이외의 외적요인이 가해져서 생명활동이 영구적으로 중지되는 경우)의 경우는 그것이 조급이라도 외적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밝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1]. 따라서 변사자의 정확한 사인규명은 사회정의와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범죄와 관련하여 초동수사하는 단계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홍은동 치과 의사 모녀살인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전문가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범인발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수사기관의 증거멸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국가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된다. 또한 무고한 자는 살인자가 되어 인권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사범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과 종류를 밝혀내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할 의무를 지닌다[2].

경찰이 취급하는 사체는 자살, 질병 등 그 사체소견이나 죽음에 이른 상황 등은 다양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사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범죄사체로 판단하여 처리해 버린 경우, 범죄를 어둠에 매장하는 결과가 되어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버리는 것만이 아닌, 국가의 형벌권 발동의 의회를 도피해, 살인범인을 사회에 방치하는 결과로써 치안상도 중대한 사태가 된다. 따라서 대부분 사체가 발견되면 가장 먼저 처리하는 사람이 경찰임을 감안할 때 사체사인의 특징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에서는 2005년부터 검시관을 채용하여 2006년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배치하였다. 검시관제도는 변사체 또는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현장에 사법경찰관과 함께 임장하여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존재 및 업무활동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서 수사에서 책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3].

기존의 상황보다는 사인분석에는 더욱 정확하여 졌다고는 하지만 많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인분석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의 변사자 처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인 일본 경찰의 변사자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템이 정착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일반적 논의

1. 변사자의 개념

유동하(2010: 24)는 변사자란 자연사 또는 병사가 아닌 사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고,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함은 부자연스러운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하였다” [4]. 유시민의 법률안 제2조 제1호에서는 “변사체라 함은 범죄와 관련하였거나 또는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 또는 사인이 불명확하여 그 사인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타)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 9765호)의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에서 변사체를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일부개정2005. 8.26. 법무부령 제577호) 제33조 변사자의 검시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로 정의하고 있다.

2. 검시의 종류

검시는(postmortem investigation, death investigation, medico-legal investigation)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오감의 작용으로 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처분[5].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조사하여 그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인가를 밝혀려는 행위[6],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7]을 말한다. 경찰청 검시 관운영지침 제3조에서는 검시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시는 목적에 따라 행정검시와 사법검시로 나눈다.

2.1 행정검시

행정검시란 범죄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체 또는 사태에 대하여 경찰관등의 신원확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5.4 법률 제 10279호 제90조), 사체처리(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2조제1항 제3호, 제5호, 제6호) 전염병예방(검역법 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제15조 제1항 제6호) 등 일정한 행정목적의 행하는 검시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체에 대한 행정검사의 요령을 규정함으로써 사체처리를 간소화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할 목적으로 운용중인 ‘행정검시규칙(1992년 10월 30일 경찰청예규 제92호, 개정 2010. 10. 26 훈령604호)’ 제2조 대상에서는 ‘행정검시의 대상은 수재, 낙뢰, 과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위 병사자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검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한편 처리요강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 3조에 따르면, 지구대장·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등”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범죄수사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2010.10.26 개정>(제1항),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변사체가 행정검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구대장등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제2항).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고, 사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

원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0.10.26 개정>(제3항), 행정검시를 행한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 조서, 의사검안서, 사체인수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경찰서장은 지구대장등이 보고한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여백에 행정검시 지휘서명 날인)에 행정검시결과 보고서를 첨부, 일자순으로 빠짐없이 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색인을 기록한 행정검시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5장). 이처럼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제4조).

따라서 실무는 종래 변사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두 사법검시로 이행하여야 하던 것을 범죄에 관여되지 아니한 사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검시로 종결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다[8].

2.2 사법검시

사법검시는 범죄의 혐의를 전제로 하는 처분은 아니며, 검시결과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비로서 수사가 개시됨으로 검시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수사처분 그 자체는 아니다[9]. 따라서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체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사법검시라고 할 수 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 2009.6.9 법무부령 제669호) 제11조 검시에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시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항).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하여야 한다(제2항).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항).

III. 한국경찰의 변사자 현황 및 문제점

1. 변사자 대응과정

한국의 경우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지구대에 신고되고 지구대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보존을 하고 상급기관인 경찰서에 보고한뒤, 경찰서의 형사과장(형사과장이 없을 경우 수사과장)이 담당경찰관을 지정하면 담당 사법경찰관은 검시관 또는 지역의 의사(주로 경찰공의)를 대동하여 현장이나 변사체가 이송된 병원에서 검안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이후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은 변사 발생보고서를 상급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며, 이때 경찰의 의견을 첨부하는데, 변사자에 대하여 부검이 필요한 경우 부검의견을 기재한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보고서를 송부하는데, 검사는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직접검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현장에 나가 다시 시체를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하는 반면,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부검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시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검을 시행하라고 경찰에게 지시한다.

이에 경찰은 시체의 사진, 시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일건서류로 꾸며 검증영장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부검의를 선정하여 부검을 의뢰하게 되고, 이때 부검의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통상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48시간 내지 72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10].

2. 변사자 현황

최근 1988-2008년 10년간 변사자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약 3만건의 변사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 있어서는 사인은 자살, 운수사고, 기타, 추락, 익사, 타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변사자 대비 범죄관련비는 0.6%이며 2008년은 0.5%이다. 그러나 기타의 경우 2007년 17.9%, 2008년 19.5%로 나타났다.

2006-2008년 경찰청 변사자 부검통계를 살펴보면, 2006년 변사자 중 부검율은 21.7%, 2007년은 20.7%,

2008년은 21.2% 나타나 최근의 부검율은 대체로 2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

현행법상 변사자가 발견되면 경찰이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자의 검안을 판단한다. 그러나 변사자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법의학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사인의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의 정확성은 변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변사사건 발생보고서에는 발견일시, 발견장소, 발견자의 인적사항, 변사자의 인적사항, 사인, 사망추정년월일, 사체의 상황 등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지만(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 2005.10.6 제462호), 이러한 보고내용만으로 타살혐의를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내리기에는 불충분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보고내용 기재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여 변사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다[11].

또한, 변사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은 지휘·집행·실행·부검 등 결정에서 서로 다른 직책이 관여하기에 책임이 분산되어 있다[12].

IV. 일본경찰의 변사자 현황 및 시사점

1. 변사자 대응과정

경찰관이 비자연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먼저, 외견상의 소견, 사체의 상황, 현장관찰, 관계자로부터의 사정청취결과 등에서 그 사체가 범죄에 따른 것이 명백한 것인가, 범죄에 관련된 것이 명백한 것인지, 범죄사체인지 비범죄사체인지 명백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른 세 가지로 구분한다. 통상의 경우, 이 제1차 판단을 하는 것은 관할경찰서의 경찰관(통상의 경우 형사)이다. 해당경찰관은 경찰서를 경유해 경찰본부의 담당부서(통상의 경우 형사부 수사 제1과 검시계)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받으면서 각각의 분류에 알맞은 처치를 취하도록 한다.

먼저, 범죄사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서로써 그 단계부터 수사가 시작되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사체의 검증 또는 실황검사를 실행하도록 한다. 또, 비범죄사체에 대해서는 사체취급규칙(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4호)에 의거해 사체검사를 실행하도록 한다. 변사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및 검시규칙(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3호)에 의거해, 검시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 검시는 본래 검찰관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지만, 동조 제2항에 의거해 대행검시라 하는 형태로 경찰관이 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변사자에 대해 경찰관이 검시를 행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수사의 일환으로 당연하지만, 범죄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비범죄사체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사체검사를 행하는 것은, 사인을 밝히는 것에 따라 같은 사고의 방지를 도모, 또 해당 사체의 신원을 조사해 유가족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따라, 관계자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경찰법 제2조의 경찰책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이처럼 제1차적 사인구명에 적합한 이유이지만, 전문교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만으로 사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검시의 경우, 반드시 사체검시 경우에는 원칙으로써 의사입회를 요구하도록 되어있어, 의사의 검안을 통한 의학적인 소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의사의 의학적인 견해는 참고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관이다.

또한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만으로는 판단에 결단을 내리지 못 할 경우에는 경찰본부형사부에 소속하는, 고도의 전문교양을 받은 형사조사관이 현장에 나와서, 사인판단을 한다. 특히, 변사자 검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한 현장에 입장하도록 되어있다.

사체를 표면부터 관찰해도 사인이 판단되지 않는 경우나,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체를 해부하여도 된다. 범죄사체 또는 변체 가운데 검시한 결과 범죄의 의문이 강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조사의 과정에 따라 판사의 감정처리허가 상황 발부를 얻어 해부의에 감정촉탁 하도록 한다. 이 수속에 따른 해부를 사법검시라 말한다. 사법검시에 관계된 많은 경비에

대해서는 동경부내의 것을 제외한 감식관계경비로써 경찰청예산에서 국비 지급되고 있다.

한편, 비범죄사체에 대해서는 범죄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범죄수사의 관점에서 사법해부는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이때는 감찰의(監察医: medical examiner)제도가 시행되는 일부대도시에 있어서는,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의 해부가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검찰의에 따른 해부를 행정검시라 말한다. 또 감찰의제도가 없는 그 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동법 제7조에 의거, 유족의 승낙을 얻어 해부가 행해지는 일이 있어, 이것을 승낙해부라 한다.

전문가의 해부에 따라, 더욱 더 신중히 사인을 판단하고, 감정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하지만, 역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경찰관으로써, 전문의의 견해를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의존하지 않고, 사체의 상황, 현장 검찰, 관계자로부터의 사정청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인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13].

일본의 경우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에는 사망한 때, 장소, 사인의 외에 사인의 종류가 기재된다. 사인의 종류에는 1. 병사 및 자연사, 불의의 외인사로써(2. 교통사고, 3. 쓰러짐, 전락(4. 익사, 5. 연기·화재 및 화염에 의한 상해, 6. 질식, 7. 중독, 8 기타) 그 밖에 미상의 외인사로써 {9. 자살, 10. 타살, 11. 기타 미상}, 그리고 병사인지 외인사인가 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12. 미상의 죽음인 12로 분류된다. 확실히 진단을 내린 병사의 경우, 진료를 수행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만, 2이하의 외인 또는 미상의 경우, 병사인 것이 의심되어도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체를 검시한 의사는 반드시 이상사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의사법 제21조).

일본의 감찰의제도(監察医: medical examiner)는 '사체해부보존법'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정령이 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는 그 지역 내에서 전염병, 중독 혹은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체 기타 사인불명의 사체에 대하여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감찰의를 두고 이들에게 검안하도록 하거나, 검안에 의해서도 사인이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검할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감찰의제도가 있

는 지역은 감찰의를 두어야만 하는 지역을 정하는 정령(정령 제385호)에 따라, 동경23구, 오사카, 요코하마시, 나고야, 고베시 등 5개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

감찰의제도를 시행하는 도쿄부감찰의무원을 살펴보면, 조직은 2007년 기준으로 감찰의(상근11명, 비상근16명), 검사과 16명, 감찰의보조 17명, 사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내용은 검안요청에 따라, 검안반(감찰의 1명, 보조 1명, 운전수 1명(위탁)) 4-5반, 반입검안반 1반을 편성하고, 현장, 경찰서 혹은 의무원에서 검안을 하고, 사인, 사망의 종류 등이 판명된 경우에는 의학적 사실을 유족에게 설명하고, 그 현장에서 「사체검안서」를 교부한다. 검안에 의해서도 사인, 사망의 종류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에게 해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승낙 후, 유해는 의무원으로 반송된다.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체의 경우에는 대학법의학교실에서 사법해부가 행해진다.

의무원에 반송되어온 유해는, 해부반(감찰의, 검사기사, 보조 각 1명) 3반에 의해 해부가 되고, 종료후, 봉합, 청식하고, 유가족에게 인도한다. 그 때에, 당일의 해부에서 판명된 소견, 사인 등을 설명한다. 유해는 수송차에 의해 자택 등으로 수송된다.

해부시에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해서, 병리조직학적 검사, 약화학적 검사, 세균학적 검사 등의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인을 확정한다. 해부당일부터 사인 확정까지는 약 40일(1~2개월)이 소요된다[14].

2. 변사자 현황

경찰이 취급한 비자연사체의 취급총수의 추이는 1998년 이후 매년 증가가 계속되어, 2009년 중에는 160,858체로, 1998년의 107,173체와 비교하면 사체취급수로 53,685체가 증가하여 1998년의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경찰에 따른 사체취급총수 중, 형사조사관이 입장한 사체수 및 입장률의 추이는 2007년은 18,322체로, 1998년의 형사조사관 입장사체수 16,806체와 비교하면 1,516체 증가한 것으로, 입장률에 대해서는 1998년은 15.7%였던 것에 비해, 2007년에는 11.9%로 3.8포인트

감소했다.

사체취급총수에 대한 법의해부수(사법해부 + 넓은 뜻의 행정해부) 및 법의해부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14,725체로 사체취급총수에 차지하는 법의해부율은 9.5%이다. 이 중 사법해부수는 5,901체로 사체취급총수에 차지하는 사법해부율은 3.8%이다(변사체수에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면, 37.7%의 사법해부율이 된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법의해부율을 보면, 8.9%부터 10.5% 사이에서 추이하고 있다. 또,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법해부율을 보면, 3.3%부터 3.8%사이에서 추이하고 있다[15].

3. 변사체 대응의 시사점

3.1 형사조사관제도

일본의 형사조사관은 형사부문에 10년 이상의 수사경험을 보유한 한편, 경찰대학교에서 법의전문연구과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경시 또는 경부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임용된 검시전문가이다¹⁾. 2010년4월 형사조사관 수는 221명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의 형사조사관과 유사한 제도로서 검시관제도를 2005년부터 선발하여 2006년부터 일선에 시행하고 있다. 검시관의 자격요건은 의학, 간호, 임상병리, 생물 분야를 전공한자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그들은 일반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선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6개월간, 지방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6개월간 자체실습교육 후 운용되고 있다. 2010년 현재 57명이 재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경찰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서 수사 권이 없으며 이들의 업무 또한 사법경찰관과 함께 임장하여 변사체의 죽음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사법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6].

일본의 형사조사관제도는 사법경찰의 신분으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연2회 경찰대학교에서 약 2개월간 연수실시, 경찰서에서는 담당자에게 1주간 정도 연수함.

3.2 감찰의제도

감찰의제도의 도입이다. 감찰의제도를 통하여 사법 검사에서 행정검시 우선으로 전환하고 있다. 변사사건이 발생 시 법의학 전문지식을 갖춘 감찰의로 하여금 우선 감안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사법부검은 검찰로 이송시키고 행정부검은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보건정책, 민사책임 문제, 의학발전 및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는 한편 죽음에 대한 사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이다[17].

3.3 사체취급에 관한 경찰관의 교양 프로그램

일본경찰청은 경찰대학교에서 법의학 등의 전문적 교양을 실행하는 법전문연구과를 교육하고, 현장에서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무보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검시실무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전국형사조사관회의 및 관할구역 형사조사관회의 등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법의전문연수과는 형사조사관 임용의 요건으로 봄과 가을 연2회 실시 하고 있으며, 2개월에 과정에서 법의학교수에 따른 강의이외, 9개 대학의 법의학교실 및 동경도 감찰의무원에 따른 해부 입회실습을 실시하며, 사인규명에 대한 높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있다. 2007년 봄부터는 일본법의학회의 후원을 얻어 각 과목의 강사에 학회에서 추천한 법의학교수를 초빙하는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에서도 자치경찰 수준의 독자적인 검시실무전과를 실시하고 법의학자나 검안을 실행하는 의사와 제휴한 연수회를 개최, 경찰서에 순회교양을 실시, 실제 사체취급업무를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비자연체의 약 90%는 경찰서의 경찰관에 따라 검시 사체검사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체를 취급하는 제일선의 경찰관에 대한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검시실무전과교양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따른 중점전과교양을 지정하고 일차적으로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무보 또는 순사부장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18].

V. 결론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도 검시관 제도를 개선하여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 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 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취급하는 경찰관의 지식 및 기능향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청 및 경찰서 수준에서 수행하는 사체취급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검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경찰서의 수준에서는 지역의 의대와 협조하여 법의학 전문과정의 연수회 등을 자주 개최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에 대한 오인검시나 위장살인사건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적 판단에 이바지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거나 간이검사 등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외국사례를 소개한 문헌연구로서 한국의 현실적 적용방안에 대해서 일정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사체 처리에 대한 보다 현실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직접 변사자를 처리하는 경찰관, 검시관을 대상으로 사례연구와 설문조

사를 통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5, p.25, 2005.
- [2] 하태권, “현행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18권, 제2호, pp.501-524, 2006.
- [3] 안길수, “경찰검시관 운영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pp.177-210, 2009.
- [4] 대법원판례, 2003도 1331.
- [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 [6] 배중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5판*, 홍문사, 2004.
- [7] 광정식,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의문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대한 법의 학회, p.7, 2007.
- [8] 이삼재, “번사체의 검시에 관한 고찰”, *경찰종합 학교 교과논문집*, 1989.
- [9]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2.
- [10] 강신몽, “검시제도의 의학적 검토”, *인권과정의*, 제244호, p.42, 1996.
- [11]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5, p.44, 2005.
- [12] 황적준, “검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치안 정책연구*, 제16권, pp.23-24, 2003.
- [13] 種谷良二, 竹中淳一, “死因究明制度の現況と課題”, *警察學論集*, 第62卷, 第1号, pp.36-55, 2009.
- [14] 複永龍繁, “日本の死因究明制度の現況と將來展望”, *警察學論集*, 第62卷, 第1号, pp.56-70, 2009.
- [15] 種谷良二, 竹中淳一, “死因究明制度の現況と課題”, *警察學論集*, 第62卷, 第1号, pp.41-43, 2009.
- [16] 안길수, “경찰검시관 운영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p.194, 2009.
- [17] 도중진, *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5-25, p.43, 2005.
- [18] 日本醫學會, “異狀死ガイドライン”, *日本法醫學會雜誌*, 第48卷, 第5号, p.357, 2005.

저 자 소 개

이 상 원(Sang-Won Lee)

정회원



-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법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민간경비

이 승 철(Seung-Chal Lee)

정회원



- 2004년 2월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0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 2010년 7월 ~ 현재 : 충남도립청양대학 경찰행정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학, 민간경비, 지방행정